

가정폭력과 인권 Domestic Violence and Human Rights

이철호

남부대학교 경찰행정대학 교수

Lee Cheol-Ho

Nambu Univ.

요약

가정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집단으로서 가정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우리사회에서는 가정폭력(家庭暴力)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정폭력은 사회의 폭력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폭력을 가르치는 폭력학습의 장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가정폭력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가정폭력은 가해자나 피해자나 결국 모든 문제가 '인권'(人權)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관점에서 첫째,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의 실태를 파악해 본다. 둘째, 가정폭력의 원인을 밝혀본다. 셋째,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There is a growing social awareness about domestic violence in our society. People came to recognize domestic violence as a social problem as the public began to aware that domestic violence not only reflects social violence but also provides learning place of violence to the child.

This thesis started view point of human right. Domestic violence is human right problem on victims and assaulters. First, it is to investigate domestic violence in Korea. Second, it analyzed cause of domestic violence. Third, This study is about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and 'Act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this study on the several legal problems two special Acts.

I. 서론

폭력(暴力)의 사전적 의미는, 육체, 정신, 에 대한 물리적 강제력이나 침해를 의미한다. 싸움을 할 때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행동), 군대의 전투 행위,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상사(上使)가 아랫사람에 대한 과격한 언어의 사용 등이 폭력에 해당한다.

폭력의 문제는 곧바로 인권의 문제이다. 헌법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제도와 가족생활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36조 제1항). 가정폭력은 이러한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인권의 문제이다. 가정폭력이 타인이 아닌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인권침해인 것이다.

가정폭력은 일반적이면서도 가장 은밀하게 일어나는 잠행성(潛行性)이 큰 범죄라 할 수 있다. 또한, 가족구성원이라는 고정된 대상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사되며, 가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교육과 훈계의 도구 혹은 갈등해결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지는 특징[1]을 가지고 있다.

가정폭력(家庭暴力)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1호 참조).

가정폭력은 유형별로 배우자폭력, 아동폭력, 노인폭력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배우자에 대한 폭력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뿐만 아니라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도 포함한다. 처음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로 공론화 되었을 때에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이 심각하였기에 이를 방지하고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고 가정 내 경제적 주도권을 여성이 쥐면서 남편들이 아내의 정신적·육체적 폭력에 시달리기도 한다.

아동학대란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아동학대의 원인으로는 우선 보호자의 어릴적 경험과 정서적 불안, 사회적 부적응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과 약물중독,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대[2].

노인학대란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심리적 학대, 언어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사망률의 감소와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부양기간의 장기화를 가져왔고, 가정폭력의 한 유형으로 노인학대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II. 가정폭력의 실태

경찰의 가정폭력사범 검거실태를 살펴보면, 2004년 13,770건 검거에 검거인원은 15,208명이다.

여성부가 2005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가정폭력실태조사에 의하면(19~65세 혼인경험자 6,156명 대상, 남성 3,071명/ 여성 3,085명), 신체적 부부폭력은 남편의 구타(12.1%)가 아내의 남편 구타(3.6%)보다 많았고, 발로 차거나 주먹 또는 혁대, 몽둥이로 때리고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심한 폭력'도 남편(3.7%)이 아내(1.2%)보다 3배 이상 높게 조사되었다. 부부싸움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때리려고 위협하는 정신적 폭력을 당한 비율이 42.1%, 원치 않은 성관계를 요구한 성적 폭력 비율은 7.1%로 나타났고, 신체적 폭력 또는 정신적 폭력, 성적 폭력 가운데 한 가지라도 경험한 비율은 무려 44.6%로 조사되었다.

아동 학대의 실태는 전국 39곳의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아동 학대 신고 사례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아동 학대의 77.5%가 집에서 발생하고 가해자의 83.4%가 부모로 드러났고, 2005년 아동 학대 사례는 4,633건이었으며 하루에 12.6건 꼴로 아동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학대로 인한 사망은 21명, 한 달에 1.75명꼴로 무고한 아이들이 어른들의 학대로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의 아동 학대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가정 내 발생건수는 2001년 1,686건에서 2005년에는 3,589건에 이르렀다. 아동 학대는 특히 한부모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학대의 유형으로는 방임(36.3%), 정서 학대(30.5%), 신체 학대(25.9%), 성 학대(4.6%), 유기(2.6%)의 순서로 발생하고 있다. 복지시설에서의 학대 건수도 2001년 43건에서 2005년 253건으로 5배나 급증했다(한겨레신문, 2006년 4월 29일, 11면 참조).

노인 학대의 실태는 전국 17개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2,038건의 노인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아들에 의한 노인 학대가 5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들 이외에는 며느리(19.7%), 딸(11.5%), 배우자(6.6%), 사위(1%) 등의 순으로 노인을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학대 유형별로는 언언 폭력과 정서적 학대(43.1%), 방임(23.4%), 구타를 포함한 신체적 학대(19.1%), 재산을 가로채는 금전적 학대

(12.2%) 등의 순이다(경향신문, 2006년 4월 27일, 9면 참조). 아동기에 부모의 배우자 폭력을 목격하고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폭력비율(남성 53%, 여성 64.4%)이 높아 부모의 어릴 적 경험이 이후 자녀폭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동아일보, 2005년 2월 24일, A11면)[3].

III. 가정폭력의 원인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는데, 심리학적 측면과 사회학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견해가 있기도 하며, 개인적인 측면과 가정환경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그 원인을 살펴보는 입장도 있다. 또한,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을 정신병리학적 접근, 가부장제론, 모방학습론, 스트레스론, 자원-교환이론, 하위문화이론, 성역할이론, 급진적 여권주의 관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1. 가부장적 의식

우리 사회에는 봉건적 유교윤리[4]의 잔재로 인해 마누라와 자식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家父長的 意識으로 인해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가정(家長)은 아내와 자식을 부양하고 있다는 생각에 아내와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가부장적 의식을 갖고 있다[5]. 가부장적 가정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가정 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왜곡되고, 의사결정이 가정(家長)의 일방적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폭력이 문제가 된 가정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보편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6].

2. 사회 전반에 만연한 폭력문화

우리 사회는 모든 문제와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보편화되어 있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시민의 폭력, 학교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아래 일어나는 체벌과 학원폭력, 스포츠분야에서 국위선양(國威宣揚)이라는 이름아래 자행되는 선수들에 대한 폭력, 대중매체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을 미화하고 영웅시하기까지 한다. 폭력문화는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올바르다는 가치관 대신 힘과 권위에 의한 강압적인 방식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부추기는 것이[7] 가정폭력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8].

3. 성역할이론

남자아이는 공격적이며 폭력을 사용하고, 여자아이는 남자에게 복종적이고 회생할 것을 강요하는 성역할 학습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며 이 같은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로 말미암아 가정

폭력이 발생하고 지속된다는 것이다. 여성들이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없다는 사실과 성역할관념이 복합됨으로써 가정폭력이 지속된다고 주장한다[9].

IV. 가정폭력관련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가정폭력관련특별법의 주요 내용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사람의 신고의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고소에 대한 특례, 임시조치의 청구, 법원의 보호처분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으로부터 가정의 평화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법은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목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여 가정폭력이 '사회적 폭력'이라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상담소의 설치와 운영, 일시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지원서비스 제공,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그 비용을 구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구립과 시행에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2. 가정폭력관련특별법의 문제점

2.1 「가정폭력특별법」의 문제점

1)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를 가정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가정폭력특별법 제2조 제2호 가호).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는 이미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타인이므로 이혼한 후 전 남편으로부터 구타와 시달림을 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와 실제로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라고 할지라도 현재 자녀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정구성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가정내의 폭력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가정구성원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2) 가정폭력특별법 제5조는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인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는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개입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즉시'의 불분명으로 인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10]. 또한,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의료시설로 인도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어도 가해자인 남편(또는 아내)을 경찰서로 동행한다거나 격리조치를 할 수 있는 등 가해자를 격리시킬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11].

3)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조항이 없어서 가정폭력특별법 제29조 규정이 유명무실화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임시조치의 내용이 너무 제한적이다. 예를 들면 시택식구 등 다른 사람을 통한 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임시조치의 필요성, 재산 처분의 금지, 전화접촉의 금지, 협박의 경우 가중된 형사처벌규정 도입의 검토가 요구된다[12].

4) 가정폭력특별법 제40조 제1항의 보호처분의 형평성 문제이다. 소년의 경우는 아직 범죄성이 고착화되지 않아 보호처분을 하여 건전한 인격형성과 사회성을 학습하게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지만 가정폭력사범은 그 범죄성이 고착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도 보호처분을 위주로 한다면 가정폭력사범에게 일종의 특전을 부여하게 되는 셈이 되어 가정폭력사범은 일반 형사사범에 비해 그리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사범의 경우 죄질에 따라 구분하여 형벌을 가할지 보호처분을 가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13].

2.2 「가정폭력방지법」의 문제점

가정폭력방지법의 입법 취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에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입법취지와는 달리 '가정의 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한 실증적 사례는 가정폭력 사건이 신고되어 경찰이 출동해도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해자가 현행범으로 처벌되지 않아 경찰관이 돌아간 뒤 피해자가 더 심각한 폭력에 시달린다는 점이다. 가정폭력 사범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형사처벌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가정폭력사범을 엄중처벌하지 않는 건 가정해체 및 보복의 가능성을 줄이려는 의도라고 보여지지만, 핵심은 피해자의 인권보호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V. 결 론

가정폭력은 같은 생활공동체내의 상대적 강자가 약자를 괴롭힌다는 점에서 가장 원시적인 폭력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을 단순한 '집안 일'로 인식하여 조용히 당사자들이 해결하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가정폭력은 이제 사회적 폭력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판단계에서 결정전조사 등을 통한 가해자의 성격, 범죄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한 후 이를 토대로 법집행단계에서 가해자 사후관리와 치료에 적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 문헌 ■

- [1] 김재엽, “한국가정의 폭력실태와 사회복지개입의 필요성”, 한국사회복지학(1988), p.2 이하.
- [2] 허경미, 『현대사회와 범죄』, 박영사(2005), p.167
- [3] 가정폭력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Javad H. Kashani, Wesley D.Allan 공저, 조미숙 역, 『가정폭력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21세기사 참조.
- [4] 한국사회에서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서 연유하고 있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은 ‘유교 문화(儒敎文化)’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직분이 곧 신분으로 인식되어 ‘아래 것’에 대한 폭력, 폭언, 괘시의 근거를 제공해 준다. 학교에서의 교사, 대학교에서의 교수, 군에서의 장교, 직장에서의 상사 등은 ‘아랫사람’의 인격을 짓밟음으로써 그 신분적 위치를 과시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미시적 폭력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다(박노자, 칼럼 ‘도덕’은 지배의 위장술인가, 한겨레신문, 2005년 8월 2일, p.30).
- [5] 구 민법하에서는 처(妻)는 無能力者로 되어 있었으며, 부(夫)의 허가가 없으면 중요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다(依用民法 제14조). 이것이 봉건적 가부장적 의식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또한, “북어와 마누라는 사흘에 한번씩 패야한다.”·“아내가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고쳐야 한다.”는 가부장사회의 잘못된 통념이 아내폭력을 만연시키고 있다.
- [6] 허경미·박영주, 가정폭력의 대응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8호(2004), p.322.
- [7] 권정희, 家庭暴力의 實態와 법적 고찰, 「법학논집」(이화여대 법학연구소) 제6권 1호(2001.6), p.117.
- [8] 주먹세계에만 폭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당·기업조직·관청·심지어 교회나 대학에도 폭력은 존재하는 것이다. 폭력은 각목이나 일본칼(日本刀)만 발휘되는 것도 아니다. 다수의 힘만 믿고 불의나 부정을 위해 야합해 개인의 자유를 빼앗고 불합리한 행위를 하는 모든 곳에 폭력이 있는 것이다. 이런 폭력이 있는 곳에는 예외 없이 그런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과 이것을 보면서 무감각한 이웃이 있다. 우리는 폭력의 희생자가 되면서 어느덧 폭력문화에 길들여져 버렸다. 그래서 정치테러·건축폭력·정권에 의한 불법사업이나 주먹조직의 비호로 가득 찬 이야기에 빨려든다. 액션이 많아 좋아한다는 해석은 젊은층에나 맞는 피상적 해석이다(차재호, 사회심리학적 분석 : ‘억눌린 과거[흠쳐보기]에 흠족’, 중앙일보, 1995년 2월 9일, p.17).
- [9] 최인섭 외, 「한국사회의 폭력에 대한 연구 : 진단과 처방」,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 p.200.
- [10]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이 남편의 폭력을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부 46%가 가정폭력 사실을 신고했으나 경찰이 ‘집안 일’이라며 돌아가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답했다(문화일보, 2004년 11월 4일 12면 참조). 2005년 여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11.8%에 그쳤고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가 44.3%나 돼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동아일보, 2005년 2월 24일, p.A11).
- [11]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는 2005년 3월 31일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선 방안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경찰관이 48시간 동안 격리나 접근금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긴급임시조치권> 신설 방안을 제시하였다.
- [12] 권정희, 가정폭력의 실태와 법적 고찰, p.123.
- [13] 허경미·박영주, 가정폭력의 대응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p.334